

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명칭	법인등록번호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	소재지		
	대표자		

「디지털의료제품법」 제43조.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담당자 성명

담당자 전화번호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서 2. 교육 및 훈련 관련 시설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자료 3. 교육 및 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.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운영규정 5.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리절차								
신청서 작성	➔	접수	➔	심사	➔	결재	➔	지정서 발급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
신청인		처리기관: 식품의약품안전처						